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410
----------	------

발의년월일 : 2016년 9월 7일  
발 의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5. 9. 23일 김태수 의원이 발의하여 2015. 10.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와 관련된 국민안전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표준조례안(2016.05.27)」의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본 조례안과 국민안전처 표준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사유

- 의안번호 제757호는 국민안전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명의 변경 및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방법, 포상금지급기준 등을 수정하고,  
  
신고처리, 신고의 보완요청, 처리결과 통지, 심사위원회 등의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함.
-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 시설을 다중이 이용하는 주민생활의 필수·편의시설과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한정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범위를 유형별로 명확히 분류함. (안 제2조)
- 신고자의 자격, 증명자료, 신고 기간 등 신고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명시함. (안 제3조, 제4조)
- 전문신고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포상한도와 1건당 포상금액을 규정하고 동일한 주소지에서 신고한 경우 같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1인 포상한도를 적용함. (안 제7조)
- 보복성 신고(허위·가명)의 방지 및 책임감 있는 신고를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포상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등의 신고방지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 신고인에게 신뢰성을 주고, 소방관서에서 책임감 있는 포상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자체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등 지급 대상) ①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복합건축물(제3호나 제5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1) 수신반(受信盤) 전원
- 2) 동력(감시)제어반
-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 방법) ①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10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포상금 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소포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제7조(포상금 등 지급 기준) ①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2.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②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④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가명(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시설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신고한 경우
5.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9조(처리 결과 통지) ① 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의 방

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①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환수)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 포상금 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확인조서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결정서

[별지 제5호 서식]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접 수 내 용						처 리 내 용					
		신고인			신고내용			현지 확인일자	처리결과	지급금액 (원)	지급일자	은행명 (입금계좌)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대상명 (상호명)	주소	위반내용						

주) 연번은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와 동일하게 사용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내부결재 서식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확인조서

<접수 번호 : 2017-00>

신고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 고 내 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건물명 (상호명)		대표자			
	주 소					
확 인 및 처 리 사 항	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행정처분					
	처리결과 (처리일자)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주) 행정처분란에는 과태료, 조치명령, 현지시정 등 처분사항 및 지급내용 등 모두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결정서

### 1.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2. 신고 및 확인내용

신고 내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건물명 (상호명)	
	주소 (위치)	
확인 사항	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 3. 결정내용

포상내용 (지급방법)	
이유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00 소방서장

(☎123-4567)

<별지 제5호 서식>

# 제 ○ 차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석자	외 명
4. 회의안건	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서 명
위원	서 명
간사	서 명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 data-bbox="207 616 758 705"><u>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u></p> <p data-bbox="172 757 790 1052">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구를 확보하고자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p> <p data-bbox="172 1093 790 1288">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 data-bbox="821 616 1433 705"><u>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u></p> <p data-bbox="818 757 1436 100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data-bbox="818 1093 1436 1433">제2조(포상금 등 지급 대상) ①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p> <ol data-bbox="853 1444 1436 1948"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li> <li>2. 문화 및 집회시설</li> <li>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li> <li>4. 운수시설</li> <li>5. 숙박시설</li> </ol>

② 신고포상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나.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다. 숙박시설(일반형 및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그 밖에 비슷한 시설)

라.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 중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 6. 위락시설

7. 복합건축물(제3호나 제5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1) 수신반(受信盤) 전원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행위

제3조(신고) ① 서울특별시 주민(주민등록 등본상)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불법행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만을 말한다)를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대상물의 소재지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각호 사항을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위반대상의 업소명과 주소 또는 위치
3. 신고내용 및 증명자료

〈신 설〉

〈신 설〉

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 방법) ①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신 설〉

제6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10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포상금 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소포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포상금 등 지급 기준) ①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2.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②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

제5조(포상금 지급 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④ 신고포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삭 제〉**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 이미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조치된 경우
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④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가명(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공무원 및 소방 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제7조(신고인의 보호)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신 설>

4. 소방시설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신고한 경우  
5.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9조(처리 결과 통지) ① 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①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를 (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

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환수)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제12조(환수)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 포상금 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